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원 번호	55
----------	----

2022년 6월 1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청원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고진광 외 77명
2. 소개의원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2, 교육위원회)
3. 접수일자 : 2022년 5월 27일
4. 회부일자 : 2022년 6월 7일
5.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채택)

II. 청원의 요지

-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현재 활동이 없는 무실적법인이 되었는데, 재단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함.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의 요지(최기찬 의원)

-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때인바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설립 목적대로 학생 인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2년 5월 27일 최기찬 의원의 소개로 고진광 외 77명 으로부터 청원번호 제55호로 제출되어 2022년 6월 7일 우리 위원 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하 “법인”)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사랑의 일기 시상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된 공익법인¹⁾입니다.

[표-1]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현황

설립일 설립자(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	임원
2003.7.22. 고진광(문병호)	종로구	장학사업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사랑의 일기상 시상	현금 3억	11명 (’07년 임기만료)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 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그러나 200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동 법인은 2004년에 기본재산 3억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밝혀져 이를 2009년 12월 까지 보전 조치하도록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법인은 기본재산 보전을 이행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이행계획만 제출하였습니다.

[표-2]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기본재산 보전 이행계획 제출 현황

일자	내용
2011. 1. 26.	감사 결과 보전 조치 이행 지연 소명 및 기한 연장 요청(2010.6월 말 → 2011.12월 말까지)
2013. 5. 2.	법인 정상화 지연 경위 소명 및 향후 계획 보고 - 기본재산 보전계획 변경 - 임원 정상화 계획: 2013. 7. 23. 이전까지 이사진 재구성하여 정상화 추진
2015. 11. 9.	- 정상화를 위한 대안 보고 - 교육청과 이사회 소집 및 승인 신청 사전 협의

- 또한 동 법인은 2007년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²⁾인바,

동 법인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동 법인의 기본재산 보전과 이사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동 청원은 취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였을 경우 해당 법인에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³⁾

2) 장기 무실적 법인(3년 이상 예·결산서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활동이 없는 법인)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동 법인의 기본재산 임의 처분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 뒤 기본재산 보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표-3] 공익법인 행정처분 기준

지적사항	행정상 처분 기준		
	고발	경고	주의
○ 기본재산 임의 처분 - 5억 이상 또는 기본재산의 50% 이상 손실	○	○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설립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나⁴⁾, 서울시교육청이 경고 처분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무관청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이 기본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현재 동 법인은 2007년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익법인이 이사회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처분 대상이고⁵⁾,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바⁶⁾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1 공익법인 실무지침서(서울시교육청)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5) 공익법인 행정처분 기준

지적사항	행정상 처분 기준		
	고발	경고	주의
○ 이사회 운영 소홀		○	○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① 2022.6.7. 동 법인 이사장에게 기본 재산 보전 이행을 2022.12월말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예정이고 ②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관계자들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 예정임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2, 2022.6.8.).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다른 법인들에 대하여도 동 청원과 같은 조치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의견서 : 별첨.

[별첨]

의견서

□ 청원명 :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진로교육국)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현재 활동이 없는 무실적법인이 되었는데,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어 설립 목적대로 학생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설립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
-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련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55	접수연월일	2022. 5.27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성명	고진광 외 77명	
소개의원	최기찬	소속위원회	교육
건명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육		
<p>○ 1992년부터 인성 함양을 위해 전국적인 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일기 공모와 시상을 이어오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회원들로서 2003년에 모금을 통해 확보한 3억5백만원의 출연금으로, 서울시교육감이 허가하는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을 설립하여 사랑의 일기 시상사업을 전개하였음</p> <p>그러나 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무실적법인 관리 및 정비계획의 대상이 됨</p> <p>이에 재단 설립목적대로 정상화 될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기본 재산 임의처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전 이행하도록 하고, 임원 임기 만료된 이사회 소집 및 임원취임 등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 안내해 주실 것을 청원 함.</p>			